여수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호

2026년도 제1회 여수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26년도 제1회 여수시의회 임기제공무원(속기)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여수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분 야	임용직급	임용기간	인원	근무시간	담 당 직 무
속기 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상당	1년	1명	주 35시간	•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회의 시 속기 •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회의록 작성 • 여수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관리 • 회의록 자료의 복사·열람 처리 • 그 밖에 해당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2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제31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이 아닌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성별: 제한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나. 직무분야 자격기준

○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임용분야 및 직급	자격기준
속기전문요원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주 35시간)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필수자격증**: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속기분야 실무경력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첨부 필수**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직급), 발행기관 직인 등 명시, 주 40시간 미만 근무유형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 **합격 후 자격 검증 시 기재 내용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4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무경력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4 보수 및 복무

가. 보수수준

구 분	채용분야	연봉한계액	근무시간	비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8급 상당	속기전문요원	상한액 54,334천원 **하한액 38,759천원**	주 35시간	연봉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기본연봉 외 각종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나. 복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름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 경력 등의 적합여부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초 공고에 따라 접수된 응시원서와 제출서류는 이번 재공고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기존 응시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음

나. 제2차: 면접시험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방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 평가

[평정항목]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응시자에 대한 성적 우수자 순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취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결격사유 조회 등 임용 전 확인 결과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재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 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6. 9. 17.(목)~9. 28.(월) [12일간]	2026. 10. 1.(목)	2026. 10. 2.(금)	2026. 10. 7.(수)	면접시험 후 별도 공고

※ **합격자 발표: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합격자 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7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6. 9. 17.(목)~9. 28.(월) [12일간]

* **접수시간**: 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2026. 9. 28.(월)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접 수 처: 여수시의회 의회사무국 총무팀

○ 접수방법: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2026. 9. 28.)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주 소 : 우) 597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서1로 101, 여수시의회 총무팀
- 봉투 겉면에 "**지방임기제공무원(속기) 응시원서 재중**" 반드시 표기
- **우편 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연락 실시(061-659-5022)**
-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합격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교부
- **우편접수자는 응시수수료 상당액의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함께 제출('받을 분'란 미기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여수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여수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

8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4.5㎝) **1매 별도 제출**
- **응시수수료: 속기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000**원**
- **납부방법: 응시원서에 여수시 수입증지 첨부**

※ 여수시 수입증지 구입: 여수시청 1·2청사 출장소(문의 ☎ 061-659-5022)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5매 이내, 직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⑥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속기 분야는 한글속기 자격증 필수 제출)

- **응시원서 방문접수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 **우편접수자는 면접시험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면접시험 응시가 가능함**

⑦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5호>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전임 및 비전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불인정하며, 회사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행)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포탈서비스**(total.kcomwel.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⑨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⑫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⑬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 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임용후보자는 제외)가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해 드립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되었거나 기재된 내용(학력, 관련분야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증명서는 원본(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경우)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시험공고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여수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를 포함)에는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하는 경우 기존에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재공고 후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에도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의회 의회사무국 총무팀(☎ 061-659-5022)**

<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 (원본)

본인은 2026년도 제1회 여수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여수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여수시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2026년도 제1회 여수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여수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5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2026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 표시가 되어있는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음

②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지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③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④ 복수국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⑤ 여수시수입증지란에는 **"여수시 수입증지"**(여수시청 1, 2청사 출장소) 구입 첨부

- 속기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5,000원
- 납부방법: 여수시청 내 1·2청사 출장소에서 여수시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 해당란에 첨부
- 문 의: 여수시의회 총무팀(☎ 061-659-5022)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는 사용할 수 없음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사람은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 신청 시 수입증지 대신 증명서(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번호		응시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경력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학위			

	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일	시행기관
자격증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별지 제3호>

자 기 소 개 서

☐ 응시자 인적사항

○ 응시분야:	분야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성장과정, 경력과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 응시자 인적사항

○ 응시분야:	분야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모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 직무수행 방향, 향후계획, 발전방안, 활동계획 등**을 자유롭게 기술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별지 제5호>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자 택 :	휴대폰 :	

근 무 경 력

입사일자	년 월 일	총근무일수	일	당시종업원수 (상시근로자)	명
퇴사일자	년 월 일				

근 무 세 부 내 역

해당부서근무기간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직급(위)	특이사항
~	※ 공고문에 게시된 당해 경력(업무)이 기재되어야 함		
~			
~			
~	※ 시간제 근무경력은 총 근무시간 기재 : 일 시간/주 시간/월 시간		

담 당 자	(인)
문의전화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직 인)

여수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비전임 또는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

※ 주 4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무경력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산정함

※ 예) 주 40시간이 통상근무시간인 기관에서 4년간 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 2년의 경력으로 산정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여수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 관리, 본인 확인 및 채용심사 등 임용시험 업무 수행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임용시험 및 채용심사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유·이용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존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용시험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 및 채용심사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임용시험 및 임용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여수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여수시의회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그 밖에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와 응시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수시의회인사위원회가 해당 자료의 발급기관 등에 사실을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응시자가 제출한 자료의 발급기관 및 자격요건 확인 관련 기관

(2) 제공 목적
○ 응시자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및 자격요건 확인

(3) 제공 항목
○ 성명, 경력·자격사항 등 제출자료의 진위 여부 및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사항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격요건 및 제출자료의 진위 확인 완료 시까지

(5)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자료의 진위 여부 및 응시자격 요건 확인이 불가능하여 임용시험 응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및 제출자료의 진위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 사실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한 이 동의서의 사본은 자격요건 및 제출자료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여수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여수시의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지방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결격사유 관련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별지 제9호>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 공고문에 명시된 임용분야의 응시 자격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분야 : 0000 분야

구분		임용자격 기준
공고문상 자격기준		공고문상 자격기준 중 본인에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 *(예시)*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충족 검토	자격증	공고문상 자격증 기준을 충족한 경우 기재 *(예시)* *- 000자격증 0급 취득 : 2000.01.15. ⇒ 요건 충족*
	해당분야 경력	공고문상 자격기준(해당분야 경력)을 충족한 경우 기재 *(예시)* *- 000회사 000경력 : 3년 2개월 근무 ⇒ 요건 충족*
자격요건 충족여부		- 위와 같이 공고문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위와 같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2026년 제1회 여수시의회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지원합니다.

성명 : (서명)

여수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